

2015년 4월 임시국회 관련, 10개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890)
소관상임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일자	2013. 12. 30.
대표발의	정부
주요내용	<p>가.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의 완화(안 제8조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필요적 출자비율을 현행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완화함. ▪ 중소기업 개발사업자들이 특수목적법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됨. <p>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적합통보(안 제23조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현행 사전심사제는 카지노업 허가 남발의 우려가 있음.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공모를 통한 허가의 적합통보 제도로 전환하고, 허가의 적합통보를 위한 공모의 방법과 적합통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서 공모를 통한 적합통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p>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특례의 조정(안 제2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의 폐기물 및 도로 관리 등과 관련한 도시 관리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과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문제가 있음. ▪ 현재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관할 경제자유구역 내의 폐기물, 하수도, 공원, 옥외 광고, 도로 관리 등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도시 관리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 관리 업무의 적절한 분담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p>라. 경제자유구역 통계의 관리(안 제28조의4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장에게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의 개발사업시행 대상자 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둘 이상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100% 출자하여야 하던 것을 50%를 초과하여 출자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현행 개발사업자 자격요건이 대기업 중심으로 엄격하여 건설한 민간 중소자본의 사업참여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개발사업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인용)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개발사업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려고 하기 전에 “왜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 부진한지” 그 원인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¹⁾

○또한 개발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나, 이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고 하여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유 자본이 적은 중견기업이 경쟁적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한 후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업실패에 따른 매몰비용의 증가와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안 제23조의3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은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현재 개별 민원처리방식으로 이뤄짐으로 인해 카지노 난립 가능성과 정책적 판단여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고려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을 자를 공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리고 개정안의 ‘공모방식’이란 카지노업 허가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 대상 지역과 허가 업체의 수 등을 정한 후 사전심사를 받을 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신청이 이뤄진 경우 허가 적합 여부를 통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다만, 개정안에서 본 허가 이전에 사전허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본 허가를 신청하

1) 규제 완화 및 실시계획 간소화 등으로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체 98개 지구 중 52개 지구의 개발이 완료 또는 진행 중임. 다만, 전체 지정 면적 429km²의 56%인 242km²가 개발에 미착수
 * 개발현황 : (완료) 19개 지구, (진행) 33개 지구, (미개발지) 46개 지구

는 경우에는 공모방식과 별도로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 대상지역과 업체 수를 정부에서 모두 정하는 방식은 아님. (검토보고서 인용)

○위 개정안은 크루즈산업육성법과 함께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카지노 사업을 통하여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국내에서의 지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임.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서울에 3개점, 부산에 2개점, 인천 1개점, 강원 1개점, 대구 1개점, 제주 8개점 총 16개점이 개설되어 있어 이미 충분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카지노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는 타당성이 없음. 또한 관광인프라 개발보다는 현실적으로 현금 수익 창출이 수월한 카지노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 일인지 관광진흥정책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함.

○카지노사업과 같은 사행성 사업 조장 분위기는 최근 한국마사회의 용산실내화상경마장 추진 움직임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음.

○특히 선상카지노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카지노가 난립하는 경우 수익성 악화에 따라 카지노기업이 내국인 출입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하여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표(2008년)에 따른 한국의 도박 유병율(CPGI척도 기준)은 9.5% 수준으로서 영국(2010) 1.9%, 호주(2010) 2.4%, 뉴질랜드(2009) 1.7%, 미국(2011) 3.2%, 캐나다(2008) 1.4% 등 외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이이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공모를 통해 사전심사를 하여 허가 여부에 대해 적합통보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 허가 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카지노 난립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를 한다면서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지 않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169)
소관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일자	2012.10.09.
대표발의	정부
주요내용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관광진흥법 제15조 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1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13호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호텔 등의 숙박업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학교보건법상의 정화구역 내에 호텔 등의 숙박시설의 건립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 관광 진흥이라는 경제적인 목적을 교육 환경, 특히 청소년의 교육 환경보다 우선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법익 균형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호텔시설과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중 ‘호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해당 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판례(2012. 6. 28. 대법원 2012아35 결정)가 있고,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 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건물소유자 내지 여관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384)
- 일부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위 개정안은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3.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2개)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1903390)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3.01.23
대표발의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주요내용	균형법상 추행죄에 있어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함
법안명(의안번호)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1909746)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4.03.17
대표발의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주요내용	균형법상 추행죄 조항인 「균형법」제92조6을 삭제하도록 함

2) 검토의견 : 수정입법촉구(남인순 의원안), 입법촉구(진선미 의원안)

3) 주요 검토내용

- 「군형법」 과 「형법」 은 군대 내 이성군인 간, 동성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 공연성 있는 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 그러나 「군형법」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함.
- 동성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서 처벌해야 하는 정도로 군기장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바, 이는 동성애혐오(homophobia)에 기반한 것으로서, 「군형법」 제92조의6은 형법의 피해최소성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은 동성애를 이미 수십 년 전에 비범죄화하였거나 현재 범죄화하고 있지 않은 국제인권법적 추세에 역행함. 2012년 국제연합(유엔)은 국가별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군형법상 추행죄의 폐지를 검토하라는 권고가 나오기도 함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폐지 의견을 낸 바 있음.
- 군형법상 추행죄가 폐지되더라도 군대 내 성폭력은 얼마든지 처벌 가능함.
- 따라서 「군형법」 제92조의6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4.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1911178)
소관 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자	2014. 7. 15.
대표발의	진선미 (새정연)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년 7월 5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내무부훈령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에 의하여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되어 해당 시설에서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은폐된 진실과 국가의 책임을 밝혀내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함을 목적으로 함(안제1조 및 제2조).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p>소속으로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11조). ■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6조). ■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	--

2) 검토의견: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소위 불량인에 대한 수용의 근거는 1975.12.15. 내무부 훈령 제410호로 발령한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것이었는데, 훈령에 의하면 ‘일정한 정주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꺾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해하는 모든 불량인’(제1장 제2절)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심지어 ‘노변 행상, 빈 지게꾼, 성인 꺾팔이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들’을 준 불량인으로 규정(제1장 제3절 제6호)하여 불량인 대책에 준하는 단속조치를 하였다. 말하자면 이들은 제거되어야할 대상이었던 것임.

○다른 한편, 1981.4.10.자 전두환이 총리에게 보낸 지휘서선에 의하면, ‘총리귀하. 근간 신체장애자 구걸행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바, 실태 파악을 하여 관계부처 협조 하에 일정 단속 보호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전국적으로 불량인 검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고²⁾, 결국 내무부 훈령이 존속하는 전제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복지원 수용인원을 대폭 증가하게 하는 한편, 복지원의 수용, 감금을 정당화함으로써 반사회적으로 인권침해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

○복지원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훈령에 의한 체포, 강제격리, 강제수용은 당시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2) 김용원 변호사. 전계서 31면 참조

등 그 어떤 근거에 있지 않은 것으로서, 오직 내무부 장관의 내부 업무지침인 ‘훈령’에 의한 것이었음.

○당시 유신 헌법³⁾에 의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할 자유(제10조 제1항)을 비롯하여 고문을 당하지 않을 자유(제2항), 영장에 의한 체포, 구금(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제12조)를 규정⁴⁾하고 있는 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훈령’에 의한 체포·격리·구금 등은 당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며, 물론 헌법이 인정한 제 권리를 구체화한 형법, 형사소송법상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 할 것임.

○한편, 신민당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형제복지원은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체이며, 전체 예산의 80%를 국고 및 시비로 지원받고 있었는데, ‘결산보고, 안전점검, 교육의 실효성, 원생에 대한 행정지도, 감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전혀 업무과약조차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예산 중 2년 동안 4억여원의 횡령한 사실을 보아도 ‘부산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임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음.

○당시 내무부 훈령에 의하면, ‘지 파출소 소장은 수용기관에 1주에 1회 순찰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을 방치하였으며, 오히려 형제복지원과 유착되어 있다고 수용자들은 주장하고 있다’⁵⁾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당시 복지원에의 최소한의 체포·강제격리·강제수용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위반한 위헌·위법한 훈령에 의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위헌·위법적인 훈령에 근거한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나아가 복지원내에서의 감금·강제노동, 그리고 폭행 등 가혹행위, 치사 등에 대해서는 적어도 관리감독의 소홀에 따른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⁶⁾ 할 것임.

○따라서 현재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해서 조속히 제청할 필요가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3) 대한민국헌법 [시행 1972.12.27.]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4)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72.12.27.]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제10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5) 신민당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수용자들은 경찰이 자기들을 잡아오면 근무평점 5점, 형제원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6) 형제복지원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관리감독의 범위, 형제복지원과 부산시 내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관계, 관리감독 행태 등 다각적인 조사 등을 통하여 밝혀야할 부분이기도 하나, 적어도 관리감독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법안명(의안번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38)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4. 12. 19.
대표발의	홍일표(새누리당)
주요내용	<p>가. 상고법원을 신설하여 판사를 두고(안 제3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2항), 상고법원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전원일치의견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7조 제3항).</p> <p>나. 대법원은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상고·재항고사건을 심사하여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하되(안 제14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거나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건으로 대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상당한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으로 정함(안 제14조의2 제2항).</p> <p>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사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관하여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서 정한 사건 및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 주민투표소송의 각 상고사건은 사건 심사 없이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심판하는 사건으로 정함(안 제14조의2 제1항 단서 및 각 호).</p> <p>라.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정한 상고·재항고사건을 중심으로 심판하고(안 제25조의5), 이를 제외한 상고·재항고사건을 대법원이 중심으로 심판함(안 제14조 단서).</p> <p>마. 상고법원판사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임하고(안 제17조 제1의2호), 상고법원장과 상고법원판사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어야 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44조 제2항).</p> <p>바. 상고법원에는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고(안 제25조의4),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을 둬(안 제25조의6).</p>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상고법원은 국민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업무 경감과 희소성 유지에 의한 권위 향상,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에 치중한 제도임.
- 우리 헌법은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는 3심제 심급구조를 전제로 하므로, 상고법원을 최종심으로 할 경우 국민은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됨.
-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하여 상고법원 판결 등에 대한 대법원으로서의 특별상고 및 특별재항고 제도를 인정할 경우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어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이 늘어남.
- 대법원은 상고법원 신설의 명분으로 정책법원 기능 확보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

은 엘리트 고위법관 출신 중심의 획일적 대법원 구성으로는 실질적인 정책 법원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움.

○ 상고법원은 최종심임에도 대법원과 달리 상고법원판사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고, 법원 내 고위법관의 승진코스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서 획일적 엘리트 법관에 의한 상고심 재판을 강화하고 사법 관료주의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많음.

○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하는 안 제14조의2 제2항의 사건 심사 기준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어서 사실상 안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이 스스로 심판할 사건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될 것임.

○ 대안으로서, 대법관 증원은 현재의 3심급 구조를 유지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면서 대법원의 업무경감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원을 창설해야 하는 상고법원안에 비하여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됨.

○ 특히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다양한 가치관을 갖는 법원 밖의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여지가 커지고 전문재판부를 둘 여력이 생겨 실질적인 정책법원 기능과 전원합의체 심리의 활성화와 같은 순기능도 강화할 수 있음.

○ 대법관 증원 시 전원합의체 심리가 어렵다는 반론이 있으나, 대법원장과 함께 각 소부의 구성원 1명씩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면 전원합의체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사법위원회

6. 보호수용법안

1) 법안 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보호수용법안(1914648)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	2015. 4. 9.
대표발의	정부
주요내용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2) 입법 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보호수용은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으로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와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임. 당시 보호감호제도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은 비상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이후 시행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 논란에 있었고, 결국 보호감호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국회는 위 「사회보호법」을 폐지함. 이후 정부와 법무부는 동 법률과 유사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입법하려고 시도하였으나(2010년, 2014년), 많은 비판을 받아 결국 발의되지 못함.

- 보호수용은 그 제재의 성격상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많음. 이러한 주장에 따를 경우 사후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보호수용법안은 일사부재리원칙(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됨. 가사 형벌과 보안처분의 형식적인 제재이원론을 취하여 보호수용제도를 보안처분이라고 보더라도 보호수용의 침익적인 효과에 비하여 예방의 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됨.
- 현행형법 제42조는 개정을 통하여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50년으로 이전이 비해 2배가증하였고, 또한 형법전 안에는 여전히 상습범과 누범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보호수용이라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움.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수용법이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와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위 법안의 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 표명한 바 있음.
-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또한 동 법안과 유사한 독일의 사후적 자유박탈 보안처분제도에 대하여 2009년 및 2011년 협약 위반 결정을 한 바 있음 (Case of M. v. Germany, Case of Haidn v. Germany). 유럽인권재판소의 위 두 결정에 영향을 받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사후적 자유박탈 보안처분제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판결을 함(BVerfG, 2 BvR 2365/09 vom 4.5.2011).

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1900784)
소관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자	2012. 7. 20.
대표발의	정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에관한 중,장기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서비스 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활성화 ■ 서비스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 근거마련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이 법률안은 제18대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였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 임기만으로 폐기된 것을 다시 제출한 것이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률안 제1조 참조)

○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 규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시행중인 ‘산업발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산업발전법 제1조는 “이 법은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무엇보다 가장 문제인 것은 제2조 서비스산업의 정의규정에서 ‘의료’를 삭제하고, 서비스산업의 정의를 전부 포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하였다는 점임. 그리고 이와 같은 정의규정의 포괄위임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기존의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음. 기획재정부 회의록을 살펴봐도 기획재정부장관의 해명에 설득력이 부족함.

○ 결국 본 법률안으로 인하여 의료민영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우려가 심히 중대하고, 기존의 산업발전법으로도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법안은 입법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제안일자	2015. 4. 23.
대표발의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15조의4, 제36조, 제44조제2호의2 및 제56조제2항제4호).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54조제2항).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도록 함(안 제15조의5제3항 및 제4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도록 함(안 제7조제2항).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두고,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함(안 제17조).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8조의2).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대비 안전,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연간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25조).

-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확인

	<p>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5조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보조금의 부정 교부, 아동학대 행위 등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42조의2). ■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45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함(안 제49조의3).
<p>소관 상임위</p>	<p>보건복지위원회</p>

2) 검토의견 : 입법 수정

3) 주요 검토내용

○ 개정안은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선택적으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며,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및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는 한편, 위법행위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하도록 하는 등 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함께 재발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며, 아동학대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보육교사 업무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 등은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 대책의 일환으로 전반적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의미 있고 바람직한 방향임.

○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책으로 채택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의무화 및 선택적 네트

워크 카메라 허용 조항은 영유아의 의사표현의 한계로 아동학대 여부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상황을 일부 확인할 수 있고, 보육교사들이 부당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 해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함이 바람직함.

○ 아동보육은 영유아, 보육교사와 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안전한 보육 환경 하에서 이뤄져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주체 간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교류가 전제되어야 함.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영유아 보육현장에서의 권력관계를 만들어 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아 일종의 감시 상황에 놓이게 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음. 특히 보육 및 교육의 효과는 본질적으로 장기적이고 비가시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로 인한 보육활동의 위축 효과가 간과되거나 과소평가 될 위험이 있음.

○ 나아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는 일견 객관적인 것 같으나 일정한 각도에서 촬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열람하는 자가 실제 상황을 왜곡하여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영상정보만으로는 영유아에 대한 심한 신체적 학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정서적 학대나 복합적 아동학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의 열람 과정에서 영유아 자신 및 그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고, 특히 장애·발달지연 등 특성이 있는 영유아, 교우관계에서 공격성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의 경우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음.

○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중국, 홍콩을 제외하고는 이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예는 없고, 우리나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도 이해관계인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의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를 의무화하기보다 위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여 그 본질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개정안 제1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영상정보의 수집, 활용, 관리 및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한 개정안 제15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15조의5는 그 의무 주체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15조의4 단서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관리하는 자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

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도록 한다'는 개정안 제15조의5 제4항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은 큰 문제임. 네트워크 카메라로 수집된 영상 정보는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공개된 영상을 다른 영상장치로 찍어서 재가공해 유포할 위험이 있는 등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임.

○ 위와 같은 이유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된 부분이 더 보완되어야 할 것임.

○ 그 내용으로는 위 개정안에 포함된 것 이외에,

1)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과정 수료요건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 양성 체계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함.

2)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평가항목에 학부모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참여를 활성화하여 신뢰를 제고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한 협력자로서의 관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3)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실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규정이 필요함(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항,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0조).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만0세 1:3, 만1세 1:5, 만2세 1:7, 만3세 1:15, 만4세 이상 1:20이고, 초과보육 인정범위는 만1세에서 만4세 이상이 각각 1:7 이내, 1:9 이내, 1:18 이내, 1:23명 이내이며, 농어촌 특례를 적용하면 만0세에서 만4세 이상이 각각 1:4, 1:7, 1:9, 1:19, 1:24임. 2015. 3. 1.부터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은 금지되었고, 법인·법인단체 등 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의 경우 2015. 3. 1.~ 4. 30.까지 위 초과보육 인정범위 내에서 초과보육 입소가 허용되나, 2015. 5. 1.부터 신규입소 금지 및 2016년 3. 1. 초과보육이 금지된 상황임. 만0~2세의 경우 우리 영유아보육법상 교사 대 아동 비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으나, 만3세~만5세의 경우 OECD평균이 교사 1명 당 아동 14.3명인데 반해 우리 평균은 17.5명인 상황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요구가 매우 커진 상황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축소 및 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강화는 보육의 질적 향상에 본질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짐. 그럼에도 위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2005년 이후 개정된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원장이 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삭제하여야 할 것임.

4)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단축, 보육시간 이외의 잡무 개선, 임금 및 수당 현실화, 어린이집 유형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격차 해소 등)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이 보육의 질적 향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대대적인 점검과 개편이 필요함.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에는 행정업무, 청소업무 등 담당하는 행정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은 보육재원 확충을 토대로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경각심을 높이며 부분적으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이나,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선택적으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그 한계로 실효성이 의심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및 보육교사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면이 있으며, 보육의 이념에도 반함. 더구나 어린이집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 및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및 선택적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의 환경 및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부분이 더 보완될 필요가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아동인권위원회(준)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995)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자	2014. 4. 2.
대표발의	정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의료 대상의 확대(안 제34조 제1항)■ 원격의료 실시기관의 신고(안 제34조 제2항 및 제5항 제2호)■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안 제34조 제3항 및 제4항)■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안 제34조제5항)■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실시(안 부칙 제2조)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면서 본격적인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의 출발점이 될 것임.

○ 원격의료는 안전성이 전혀 입증된 바 없고 그 책임성도 담보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고 오진의 가능성과 진단 누락 및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1일 생활권인 나라에서는 오히려 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한 방문 진료 확대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정책으로 통과시켜선 안 되는 법안임.

- 위와 같은 의료의 질 하락, 의료사고 발생 등 환자의 안전 위협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현상을 가속화시켜 동네의원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도 왜곡시킬 것임.
- 원격의료는 재벌기업들이 U-헬스 산업화라고 부르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의 선결 조건으로 재벌기업과 대형병원들의 수익 창출에는 기여할지 모르나 특히 이번 안에 장비 도입 등의 예산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원격의료장비 구축과 통신비 등으로 인해 의료비 폭등을 가져와 오히려 환자들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임.
- 또한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아직까지 도서벽지 지역 중에서 광대역망이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마을이 많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원격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나아가 원격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가 수집·가공될 수 있고, 이런 정보가 민간 보험회사 등의 이윤추구 목적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입법감시 TF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72)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2. 9. 10.
대표발의	이한성(새누리당)
주요내용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함(안 제 457조의2 삭제).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약식명령은 검찰에서 거의 대부분 경찰송치기록만 검토하여 이를 청구하고 법관도 형식적 서류 심사만으로 이를 발부하고 있어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은 법관의 면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 정식재판청구는 이러한 약식명령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의미를 가지나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식재판청구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도입되기 전에는 정식재판청구율은 1%대에 불과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음. 심지어 법원이 불이익변경을 무기로 피고인에게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폐단도 있었음.
- 정식재판청구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도입된 이래 정식재판청구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 11.6%에 달하게 되자 정식재판청구를 남용하고 있다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본 개정안은 그러한 주장을 입법화한 것임.

○ 그러나 위와 같은 폐지 주장은 상고법원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이해관계보다는 업무경감과 간이한 사건처리라는 사법서비스 종사자의 편의에 치중한 것임.

○ 정식재판청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상소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형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재판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바, 약식절차에서는 검찰의 자료만이 법원에 제출되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약식절차는 빈번하게 이용되는 형사절차여서 피고인에 불리한 제도 변경은 많은 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은 비교적 경한 형이므로 불만이 있더라도 받아들이고 불복하려면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타당하지 않음.

○ 영업범의 경우 형의 확정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러한 유형의 사건은 검찰이 처음부터 정식으로 기소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지 이를 막기 위하여 아예 정식재판청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자체를 폐지할 것은 아님.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사법위원회